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50호 2023. 6. 12.(월)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561호)
- 예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예천군 조례 2562호)
-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예천군 조례 제2563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담당관(전화 650-6065)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1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61호

예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예천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군수가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세부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 ① 제7조제1항제3호의 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관내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재가장기요양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사람
3. 제9조에 따른 신청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 받는자는 제외한다.

제9조(처우개선수당의 신청)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처우개선수당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처우개선수당 지급 결정 및 지급)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처우개선수당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1. 근무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휴업·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수당을 받게 한 경우
3.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당 신청자가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4.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12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예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명		남,여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지급계좌	은행명 : 예금주명 :						
소속 기관 확인 사항	기관명							
	신청인의 근무기간	년 개월	신청인의 근로시간	* 해당 반기 √ 표시				
				상반기()		하반기()		
				1월	시간	7월	시간	
				2월	시간	8월	시간	
				3월	시간	9월	시간	
				4월	시간	10월	시간	
				5월	시간	11월	시간	
				6월	시간	12월	시간	
「예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장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기관 직인) 예 천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제정이유

- 예천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나. 세부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다.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1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62호

예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예천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살

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거나 구조되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5. 성·연령·자살동기 등을 반영한 자살예방대책
6.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
7.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8.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위험자, 자살자의 유족 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심리상담·심리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 ① 군수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군민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내 기관·단체,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교육 및 홍보 참여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살유해정보 등의 차단) 군수는 자살 관련 유해정보를 차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살통계 수집 및 분석)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다.

제11조(민간단체 지원 등) ①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을 예방한 군민 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자살예방의 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른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가.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나. 군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다.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3년 6월 12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563호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의원 및 의회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의장은 연구활동 등의 심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명 이내의 해당 분야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군정발전 및 의원 정책개발 역량향상을 위한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심의위원회 구성인원 조정 및 민간위원 위촉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항)
- 나.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부의장으로 지정함
(안 제4조제3항)